

관세평가

【문제 1】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

1. 라이선스 계약 및 계약의 이행

한국의 자동차 제조 및 판매회사인 “K Motors”[이하 “KM”]는 신형자동차 모델 생산을 위하여 ‘자동차 조립 및 도장공장 자동화 라인(assembly and paint shop conveyor line)’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유럽 소재 “E”사로부터 ‘생산 방법 등에 관한 특허권’의 사용허락을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였다.

“KM”사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 권리사용료 계약금액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0%를 “E”사를 대리하여 한국 세무 당국에 납부하고, 권리사용료 총액의 90%를 “E”사에 송금하였다. “KM”사는 원천징수세액의 국내 납부 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거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E”사에 제공하였다.

2. 구매계약 및 계약의 이행

한편, “KM”사는 생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차체 도장공장 컨베이어 라인(conveyor line for car body painting shop)”은 실질적으로 유럽 소재 “E사(Licensor)”의 기술적 지배하에 있는 일본 “E-JAPAN”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관세 당국에 수입신고하였다.

3. 대가의 지불

위 2 건의 계약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권 등의 사용 대가: 10 억원

- ▷ 생산 방법에 관한 특허권료[조립 및 도장공장]: 8 억원
- ▷ 품질/공정관리 및 사업운영 상의 영업비밀: 2 억원

(2) 설비의 가격[CIF Value]

- ▷ 조립공장: 45 억원
- ▷ 도장공장: 15 억원

4. 제출된 자료의 법적 유효성

납세의무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바, 예시된 대가의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세 당국이 그 법적 증거력을 인정하였다.

5. 특허권 사용료 가산 비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것

- 물음 1)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실제지급가격(공제 요소는 제외)”과 “가산요소”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11점)
- 물음 2) 위에서 예시한 거래에서 무형재산권인 특허권의 대가로 지급된 권리사용료가 특정 물품과 관련 있고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여 관세법상 과세요건으로 관세 당국에 의해 인정되었는 바,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 관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수입물품”을 기술하십시오. (4점)
- 물음 3)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특허권 사용대가(권리사용료)에 대한 “조정액 및 가산율 산출식”을 기술하고, “조정액 및 가산율(%)”을 각각 산출하십시오. (15점)

【문제 2】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 거래내용 >

한국 기업 “갑”은 미국의 판매자로부터 ‘입자가속기’ 설비 세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구매계약서에 아래의 금액은 명백히 구분되어 명기되어 있다.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가격은 CIF 기준이다.

1. 구매계약에는 조립 및 설치와 시운전 등의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가 명기되어 있으며, 조립 및 설치를 포함한 모든 기술지원은 당해 설비의 수입 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다.
2.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금액에서 연불이자 금액은 명백히 구분되며,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
3. 입자가속기 설비 세트의 총금액은 USD 500,000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본체[*cost for principal machine*]: USD 300,000
 - (2) 연관 설비[*cost for interconnected machines*]: USD 120,000
 - (3) 조립 및 설치비용[*cost for assembling and installation works*]: USD 50,000
 - (4) 시운전[*trial cost*]: USD 30,000

물음 1) 관세법상 ① “공제요소”와 ②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연불이자”의 관세법령적 요건을 기술하십시오. (8점)

물음 2) 과세가격을 미화(USD)로 산출하십시오. (4점)

물음 3)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수입항”을 정의하고,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금액]의 “과세가격 확정시기[분기점]”를 기술하십시오. (4점)

물음 4) 위의 ‘입자가속기’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용 모듈’을 “갑”이 일본에서 구매해서 미국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지원요소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술하십시오. (4점)

【문제 3】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

- 우리나라의 수입전문회사 KI-1사는 다국적기업인 스위스에 소재하는 S사가 100 %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이며, 우리나라의 유통판매전문법인인 KI-2사는 KI-1사가 100 % 출자하여 설립하고 운용중이다.
- KI-1사는 각종 등산화 제품을 S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바, 2023년 12월 01일 신규모델(모델명: AAA-1) 등산화 제품에 대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AAA-1 10,000켤레를 2023년 12월 20일에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2024년 01월 10일에 도착 및 2024년 01월 13일에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 또한, KI-1사는 AAA-1과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모델 BBB-1에 대하여 별도 수입계약에 따라 5,000켤레를 AAA-1과 함께 선적 및 수입하였다.
- KI-1사는 신규모델인 AAA-1에 대하여 수입신고당시 관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수입통관한 후 당해 물품을 국내판매하여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였다.
- KI-1사의 AAA-1과 BBB-1에 대한 국내판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판매일자	판매모델명	판매수량 (켤레)	판매단가 (천원)	판매가격합계 (천원)	비고
2024.02.01	AAA-1	1,400	220	308,000	비특수관계사 판매
2024.02.15	AAA-1	1,000	220	220,000	비특수관계사 판매
2024.02.28	BBB-1	1,300	240	312,000	비특수관계사 판매
2024.03.01	AAA-1	2,200	205	451,000	KI-2사에 판매
2024.03.10	BBB-1	1,400	230	322,000	비특수관계사 판매
2024.03.20	AAA-1	2,000	210	420,000	KI-2사에 판매
2024.03.25	BBB-1	2,300	200	460,000	비특수관계사 판매
2024.05.10	AAA-1	3,400	190	646,000	비특수관계사 판매
합 계 액				3,139,000	

- AAA-1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시 KI-1사가 제출한 비용 등은 아래와 같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보고서에 근거한 수입등산화에 대한 국내판매 관련 손익계산금액

모델명	매출원가(천원)	판매비 및 관리비(천원)	영업이익(천원)
AAA-1	1,110,000	287,200	647,800
BBB-1	690,000	104,000	300,000
합 계	1,800,000	391,200	947,800

-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18 %
-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비용: 30,000 천원
-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및 그 밖의 공과금: 100,000 천원

※ 상기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이외의 다른 사실 또는 조건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음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1)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잠정가격의 신고 대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2) 위 거래내용에서 잠정가격의 신고를 한 AAA-1를 바탕으로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의 신고 대상여부를 기술하시오.

물음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1)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관련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기술하시오.
- (2)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구하고, 그 결정과정을 설명하시오.
- (3)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한 AAA-1에 대한 과세가격을 계산과정을 포함하여 산출하시오.

【문제 4】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거래내용 >

- 한국의 수입자 KI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제조·수출자 VS와 6촌 관계의 혈족으로, 신사복 의류를 수입 판매하고자 KI의 자체브랜드를 부착한 완제품 신사복을 생산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신사복의 원자재 및 부자재 등을 VS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신사복 완제품 10,000 벌을 구매하는 수입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무상으로 제공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신사복 생산을 위해 수입자가 제공한 지원비용의 내역 >

- KI가 국내에서 개발하여 VS에 제공한 신사복의 디자인 비용: USD 80,000
 - 신사복의 원자재비: 한 벌당 USD 10
 - 신사복의 부자재비: 한 벌당 USD 5
-
- KI와 VS가 체결한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르면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면서 신사복 생산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율을 신사복 한 벌당 5%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적용한 통상의 손모율을 반영한 물량을 해외로 송부하였으나, VS의 제조공장에서 해당제품의 생산과정 중에 생산중단사태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계약된 수량에 미달하는 신사복 완제품 8,000 벌만이 수입되었으며, KI는 수입시 국내 세관당국에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상기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이외의 다른 사실 또는 조건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음 1) 위의 거래내용에서 KI와 VS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관세법령을 근거로 기술하고 판단하시오. (7점)

물음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 (1) KI가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한 통상의 손모량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비용의 관세법령적 가산여부를 기술하시오.
- (2) 위의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금액을 계산과정을 포함하여 산출하시오.